

『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의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『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』는
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
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
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안 제9조제2항에

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포함하고,
안 제 15조에 학생의 인권보호 사항을 강화했습니다.

-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
고등학생 현장실습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
안전한 실습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